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5 0110 7722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139-83-0007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관리단)	
보험가입금액	金 貳百八萬六仟九百壹拾 원整 ₩2,086,910-		보 험 료	₩28,360-
보 험 기 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16년 03월 30일까지(366 일간)			
보 증 내 용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 별 약 관	※해당사항 없음			
특 기 사 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4-7 외1필지 공동주택(원룸형다세대주택)신축공사(12세대) 담보기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16년 03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5년03월31일 계약금액 ₩695,635,370- 보증금율 0.3%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2015년 03월 18일

증 권 발 급 부 서 : 부평지점
부 서 장 : 김현대
담 당 자 : 강창구
전 화 번 호 : 032-521-0021
주 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보 험 대 리 점 명 : 우미보험대리점
한미연 032-507-038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김우찬



※ 증권발급사실, 보험약관 및 보험금 청구시 보상진행사항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증권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정정된 것은 무효이며, 기타 내용이 정정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셔야 할 사항 [피보험자용] 〉

증권번호 : 100-000-2015 0110 7722

보험증권 발급사실 확인

- ◆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발급사실을 전면에 표기된 증권발급 지점에 유선 확인할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증권발급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보험계약자가 증권발급시 “인터넷 보험증권사서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서함 번호를 이용하여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 출력(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 서비스

- ◆ 피보험자는 채무이행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방법
 - ① SGI서울보증 전국 각 지점 또는 해당 보상지원단에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우편접수 가능)
 - 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상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보다 자세한 청구 절차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보상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업무 담당부서 안내

보상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강서보상지원단	02-3671-8139

약관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5 0110 7724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139-83-0007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관리단)	
보험가입금액	금 五百貳拾壹萬七仟貳百七拾 元整 ₩5,217,270-		보 험 료	₩141,800-
보 험 기 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17년 03월 30일까지(731 일간)			
보 증 내 용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 별 약 관	※해당사항 없음			
특 기 사 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4-7 외1필지 공동주택(원룸형다세대주택)신축공사(12세대) 담보기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17년 03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5년03월31일 계약금액 ₩695,635,370- 보증금율 0.75%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2015년 03월 18일

증 권 발 급 부 서 : 부평지점
부 서 장 : 김현태
담 당 자 : 강창구
전 화 번 호 : 032-521-0021
주 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보 험 대 리 점 명 : 우미보험대리점

한미연 032-507-038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김옥찬



※ 증권발급사실, 보험약관 및 보험금 청구시 보상진행사항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증권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정정된 것은 무효이며, 기타 내용이 정정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셔야 할 사항 [피보험자용] 〉

증권번호 : 100-000-2015 0110 7724

보험증권 발급사실 확인

- ◆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발급사실을 전면에 표기된 증권발급 지점에 유선 확인할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증권발급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보험계약자가 증권발급시 “인터넷 보험증권사서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서함 번호를 이용하여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 출력(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 서비스

- ◆ 피보험자는 채무이행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방법
 - ① SGI서울보증 전국 각 지점 또는 해당 보상지원단에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우편접수 가능)
 - 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상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보다 자세한 청구 절차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보상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업무 담당부서 안내

보상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강서보상지원단	02-3671-8139

약관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5 0110 7725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139-83-0007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관리단)	
보험가입금액	금 四百壹拾七萬參仟八百貳拾 원整 ₩4,173,820-		보 험 료	₩170,160-
보 험 기 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18년 03월 30일까지(1,096 일간)			
보 증 내 용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 별 약 관	※해당사항 없음			
특 기 사 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4-7 외1필지 공동주택(원룸형다세대주택)신축공사(12세대) 담보기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18년 03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5년03월31일 계약금액 ₩695,635,370- 보증금율 0.6%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2015년 03월 18일

증 권 발 급 부 서 : 부평지점
부 서 장 : 김현대
담 당 자 : 강창구
전 화 번 호 : 032-521-0021
주 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보 험 대 리 점 명 : 우미보험대리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김옥찬



한미연 032-507-0385



※ 증권발급사실, 보험약관 및 보험금 청구시 보상진행사항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증권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정정된 것은 무효이며, 기타 내용이 정정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셔야 할 사항 [피보험자용] 〉

증권번호 : 100-000-2015 0110 7725

보험증권 발급사실 확인

- ◆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발급사실을 전면에 표기된 증권발급 지점에 유선 확인할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증권발급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보험계약자가 증권발급시 “인터넷 보험증권사서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서함 번호를 이용하여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 출력(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 서비스

- ◆ 피보험자는 채무이행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방법
 - ① SGI서울보증 전국 각 지점 또는 해당 보상지원단에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우편접수 가능)
 - 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상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보다 자세한 청구 절차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보상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업무 담당부서 안내

보상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강서보상지원단	02-3671-8139

약관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5 0110 7726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139-83-0007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관리단)	
보험가입금액	금 參百壹拾參萬參百六拾 元整 ₩3,130,360-		보 험 료	₩170,160-
보 험 기 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19년 03월 30일까지(1,461 일간)			
보 증 내 용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 별 약 관	※해당사항 없음			
특 기 사 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4-7 외1필지 공동주택(원룸형다세대주택)신축공사(12세대) 담보기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19년 03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5년03월31일 계약금액 ₩695,635,370- 보증금율 0.45%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2015년 03월 18일

증 권 발 급 부 서 : 부평지점

부 서 장 : 김현태

담 당 자 : 강창구

전 화 번 호 : 032-521-0021

주 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보 험 대 리 점 명 : 우미보험대리점

한미연 032-507-038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김옥찬



※ 증권발급사실, 보험약관 및 보험금 청구시 보상진행사항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증권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정정된 것은 무효이며, 기타 내용이 정정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셔야 할 사항 [피보험자용] 〉

증권번호 : 100-000-2015 0110 7726

보험증권 발급사실 확인

- ◆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발급사실을 전면에 표기된 증권발급 지점에 유선 확인할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증권발급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보험계약자가 증권발급시 “인터넷 보험증권사서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서함 번호를 이용하여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 출력(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 서비스

- ◆ 피보험자는 채무이행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방법
 - ① SGI서울보증 전국 각 지점 또는 해당 보상지원단에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우편접수 가능)
 - 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상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보다 자세한 청구 절차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보상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업무 담당부서 안내

보상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강서보상지원단	02-3671-8139

약관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5 0110 7727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139-83-0007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관리단)	
보험가입금액	금 參百壹拾參萬參百六拾 圓整 ₩3,130,360-		보 험 료	₩212,700-
보 험 기 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20년 03월 30일까지(1,827 일간)			
보 증 내 용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 별 약 관	※해당사항 없음			
특 기 사 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4-7 외1필지 공동주택(원룸형다세대주택)신축공사(12세대) 담보기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20년 03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5년03월31일 계약금액 ₩695,635,370- 보증금율 0.45%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2015년 03월 18일

증 권 발 급 부 서 : 부평지점
부 서 장 : 김현태
담 당 자 : 강창구
전 화 번 호 : 032-521-0021
주 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보 험 대 리 점 명 : 우미보험대리점

한미연 032-507-038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김옥찬



※ 증권발급사실, 보험약관 및 보험금 청구시 보상진행사항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증권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정정된 것은 무효이며, 기타 내용이 정정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셔야 할 사항 (피보험자용) 〉

증권번호 : 100-000-2015 0110 7727

보험증권 발급사실 확인

- ◆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발급사실을 전면에 표기된 증권발급 지점에 유선 확인할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증권발급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보험계약자가 증권발급시 “인터넷 보험증권사서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서함 번호를 이용하여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 출력(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 서비스

- ◆ 피보험자는 채무이행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방법
 - ① SGI서울보증 전국 각 지점 또는 해당 보상지원단에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우편접수 가능)
 - 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상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보다 자세한 청구 절차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보상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업무 담당부서 안내

보상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강서보상지원단	02-3671-8139

약관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5 0110 7728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139-83-0007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관리단)	
보험가입금액	금 參百壹拾參萬參百六拾 元整 ₩3,130,360-		보 험 료	₩425,410-
보 험 기 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25년 03월 30일까지(3,653 일간)			
보 증 내 용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 별 약 관	※해당사항 없음			
특 기 사 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4-7 외1필지 공동주택(원룸형다세대주택)신축공사(12세대) 담보기간 2015년 03월 31일부터 2025년 03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5년03월31일 계약금액 ₩695,635,370- 보증금율 0.45%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2015년 03월 18일

증 권 발 급 부 서 : 부평지점

부 서 장 : 김현태

담 당 자 : 강창구

전 화 번 호 : 032-521-0021

주 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보 험 대 리 점 명 : 우미보험대리점

한미연 032-507-038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김우찬



※ 증권발급사실, 보험약관 및 보험금 청구시 보상진행사항은 SG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증권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정정된 것은 무효이며, 기타 내용이 정정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셔야 할 사항 (피보험자용) 〉

증권번호 : 100-000-2015 0110 7728

보험증권 발급사실 확인

- ◆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발급사실을 전면에 표기된 증권발급 지점에 유선 확인할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증권발급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보험계약자가 증권발급시 “인터넷 보험증권사서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서함 번호를 이용하여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 출력(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 서비스

- ◆ 피보험자는 채무이행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방법
 - ① SGI서울보증 전국 각 지점 또는 해당 보상지원단에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우편접수 가능)
 - 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상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 보다 자세한 청구 절차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보상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업무 담당부서 안내

보상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강서보상지원단	02-3671-8139

약관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